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람	기관위원장

제 692 호    2009. 4. 30 (목)

차    례

규    칙

- 인천광역시서구규칙 제718호 인천광역시서구제안규칙 전부개정규칙 ----- 2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09-25호 지적측량기준점(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 고시 ----- 22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9-545호 인천광역시 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35

회 람									
--------	--	--	--	--	--	--	--	--	--

**발행 : 인천광역시서구**

**편집 : 기획홍보실 (032-560-4140)**

인천광역시서구제안규칙 전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이 훈 국

2009년 4월 30일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718호

### 인천광역시서구제안규칙 전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서구제안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제안 규칙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소속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계발하여 이를 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구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제안제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공무원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구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이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라.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마. 구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아이디어제안”이란 제안자가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실시제안”이란 제안자가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공모제안”이란 구청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5. “채택제안”이란 구청장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6. “자체우수제안”이란 구청장이 채택한 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

여 인천광역시장에게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7. “중앙우수제안”이란 행정안전부장관이 자체우수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 제2장 제안의 제출 등

**제4조(제안의 제출)** ①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의 제안서를 연중 수시로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을 실물로 제작한 경우에는 이를 심사를 위한 자료로서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제안의 공동제출)**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공무원 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함에 있어서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제안의 접수)** ① 제출받은 제안이 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② 접수된 제안 중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으면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제8조(제안의 보완)** ①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으면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안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 제3장 제안의 심사

**제9조(심사기준 등)** ①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1. 창의성
2. 능률성 또는 경제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노력도

② 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 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심사기준의 운영 및 심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0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구청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조회 등)** ① 구청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부서 또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안이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청장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제1항및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불채택제안의 재심)** 구청장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19조의 관리기간 중에 있는 불채택 제안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3조(제안심사위원회)** ① 구청장은 접수된 제안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의 결정
2.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3. 제안 실시성과의 평가

4.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자(이하 “실시자”라 한다)의 기여도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③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시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4장 제안에 대한 시상 및 보상 등

**제14조(채택제안의 등급 결정)**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특별상, 우수상, 우량상, 장려상, 노력상으로 구분하고,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제안심사에 참가한 심사위원의 평가점수중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로 결정한다.

③ 제1항의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표창하거나 「인천광역시서구포상조례」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제15조(부상금의 지급)** ①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예산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제안자와 제10조제3항에 따른 실시자가 다른 아이디어제안의 경우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1. 특별상은 1제안당 200만원이상 300만원이하
2. 우수상은 1제안당 100만원이상 200만원 미만
3. 우량상은 1제안당 50만원이상 100만원 미만
4. 장려상은 1제안당 30만원이상 50만원 미만
5. 노력상은 1제안당 10만원이상 30만원 미만

② 구청장은 채택되지 아니하거나 창안등급을 받지 못한 채택제안의 제안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격려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상여금 지급)** ①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제안의 경우로써 제안자와 실시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1. 제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는 경우
2. 제안의 실시로 구 수입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제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의 지급액은 제23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하 되, 그 금액은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③ 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연도의 예산에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연도의 예산에 이를 반영하여 지급한다.

④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여금은 제안자가 지정한 자 및 상속인의 순으로 지급한다.

**제17조(그 밖의 보상)** 구청장은 제안의 전시 등에 필요하여 제안자에게 시 제품을 제작토록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 제5장 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승계 등

**제18조(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승계 및 보상)** ① 구청장은 채택제안이 성질상 구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특허법」에 따른 직무발명 또는 「실용신안법」에 따른 직무고안이거나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직무디자인에 해당될 경우에 그 권리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는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 직

무발명보상조례」를 적용한다.

## 제6장 채택제안의 사후관리

제19조(관리기간) ① 채택제안은 채택 결정일 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 결정일 부터 2년간 이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② 채택제안이 채택 결정된 후 제20조에 따라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하는 경우 그 수정·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관리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20조(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 구청장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면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불채택제안의 활용) 구청장은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 중 활용이 가능한 제안을 홍보하여 행정개선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실시의 권고) 구청장은 채택제안이 다른 기관에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인정되면 해당기관에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그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23조(실시성과의 평가) ① 채택제안의 소관 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의 실시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소관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평가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또는 수입 증대 : 제안의 실시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2. 행정개선: 채택 결정일 부터 3년간

④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 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24조(실시성과의 평가방법)** ①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다른 예산의 절감액 및 구 수입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려면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는 공제하여야 한다.

②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수·우·미·양·가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2. 행정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
3.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
4. 근무환경·조건의 개선
5. 보건·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
6.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 제7장 보칙

**제25조(제안관리기록부)** ① 구청장은 별지 제6호 서식의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제안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여금 지급의 적용례) 제16조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채택되는 제안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상여금지급 기준액표(제16조제2항관련)

지 급 대 상		상여금 지급기준액
예산 절감	1,000만원 이하	상여금=예산절감액×30/100
	1,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상여금=(예산절감액-1,000만원) ×20/100+300만원
	1억원 초과	상여금=(예산절감액-1억원) ×10/100+2,100만원
구 수입 증대		수입증대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지급
행정 개선		·수 : 1,000만원 이상~2,000만원 이하 ·우 :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미 : 500만원 미만

(별지 제1호서식)

(제1쪽)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제안서

수 신 :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제안제목 :

제 안 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급(직위)	
	기여도(%)		이메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 )	팩스번호	

공 동 제 안 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급(직위)	기여도(%)

※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    년)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제안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안 자 :                    (서명)

공동제안자 :                (서명)

- 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구 수입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에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m<sup>2</sup>)

(제2쪽)

① 제 안 제 목	
② 제 안 종 류	
③ 개 요	
④ 현 황 및 문 제 점	
⑤ 개 선 방 안 ( 개 선 내 용 )	
⑥ 기 대 효 과 ( 개 선 성 과 )	■ 성과가 나타난 일자(실시제안) :
⑦ 조 치 사 항	■ 관련규정 개정( )      ■ 인력추가 지원( )    ■ 예산확보·지원( ) ■ 업무프로세스 조정( )    ■ 관련기관 협의( )    ■ 기타(            )

## &lt; 작 성 요 령 &gt;

- ① 제안제목 : 제안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함
- ② 제안종류 : 아이디어 제안, 실시제안 및 공모제안 중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함
- ③ 개 요 : 전체 제안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술함
- ④ 현황 및 문제점 : 현행제도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 ⑤ 개선방안(개선내용) : 아이디어·공모제안→개선방안, 실시제안→개선내용 기술  
- 해당 제안의 내용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 및 해결한 내용을 기술함.
- ⑥ 기대효과(개선성과) : 아이디어·공모제안→기대효과, 실시제안→개선성과 기술  
- 아이디어제안은 제안의 실시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실시제안은 개선성과가 나타난 일자와 그 성과내용을 상세히 기재하되, 그 효과가 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경우는 그 금액을 기재함
- ⑦ 조치사항 : 해당 제안을 실시할 때 조치할(한) 사항을 예시에서 선택하고, 기타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술함.

(별지 제2호서식)

## 재심요청서

수신 :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제안제목 :

접수번호		제안종류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일자	
성명		소속		직급(직위)	

&lt;재심요청 사유&gt;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제안 규칙」 제10조에 따라 본 제안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m<sup>2</sup>)

(별지 제3호서식)

(제1쪽)

## 제 안 추 천 서

수 신 : 인천광역시장

제안제목 :

제 안 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급(직위)		
	기여도(%)		E - m a i l		
	전화번호	(휴대폰 : )	팩스번호		
공 동 제 안 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급(직위)	기여도(%)
실시자					
제 안 심 사 결 과	창 안 등 급		부 상 금		
	인사상 특전		표창구분		
	추 천 의 견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제안 규칙」 제3조제6호에 따라 자체우수제안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인)

- 붙임자료
1. 자체우수제안 실시계획서 (별지 제4호서식) (※ 아이디어제안만 해당)
  2. 제안내용 설명서
  3.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4. 제안심사 관계서류 사본
  5. 그 밖에 참고자료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m<sup>2</sup>)

(제2쪽)

① 제 안 제 목	
② 제 안 종 류	
③ 개 요	
④ 현 황 및 문 제 점	
⑤ 개 선 방 안 ( 개 선 내 용 )	
⑥ 기 대 효 과 ( 개 선 성 과 )	■ 성과가 나타난 일자(실시제안) :
⑦ 조 치 사 항	■ 관련규정 개정( )      ■ 인력추가 지원( )   ■ 예산확보·지원( ) ■ 업무프로세스 조정( )   ■ 관련기관 협의( )   ■ 기타(            )

## &lt; 작 성 요 령 &gt;

- ① 제안제목 : 제안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함
- ② 제안종류 : 아이디어 제안, 실시제안 및 공모제안 중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함
- ③ 개 요 : 전체 제안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술함
- ④ 현황 및 문제점 : 현행제도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 ⑤ 개선방안(개선내용) : 아이디어·공모제안→개선방안, 실시제안→개선내용 기술  
- 해당 제안의 내용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 및 해결한 내용을 기술함.
- ⑥ 기대효과(개선성과) : 아이디어·공모제안→기대효과, 실시제안→개선성과 기술  
- 아이디어제안은 제안의 실시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실시제안은 개선성과가 나타난 일자과 그 성과내용을 상세히 기재하되, 그 효과가 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경우는 그 금액을 기재함
- ⑦ 조치사항 : 해당 제안을 실시할 때 조치할(한) 사항을 예시에서 선택하고, 기타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술함.

(별지 제4호서식)

자체우수제안 실시계획서	
제안제목	
실시기관·부서	
실시자	
실시시기	
실시내용	
기대효과	
실시에 필요한 검토사항 (예산확보, 법령정비, 관계기관 협의, 민원 발생 여부 등)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m<sup>2</sup>)

(별지 제5호서식)

## 제안 실시 평가서

수 신 :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제안제목 :

제안종류				관리번호			
채택연도				창안등급			
제안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급 (직위)		기여도(%)	
공동제안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급(직위)	기여도(%)	
실시자							
보상	인사상 특전					부상금	
제안평가	최초실시일자				효과측정기간		
	효과	구분	·예산절감( ) · 구 수입증대( ) ·행정개선( )				
		금액 또는 개선실적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제안규칙」 제23조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소관 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m<sup>2</sup>)

(별지 제6호서식)

(제1쪽)

제안관리기록부						
제안제목						
제안종류				관리번호		
채택연도				창안등급		
제안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급(직위)		
	기여도(%)			전화번호		
공동제안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급(직위)		
	기여도(%)			비고		
실시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급		
	기여도(%)			비고		
제안개요						
시상 및 보상	포상종류			인사 특전 부여	종류	
	부상금				일자	
제안실시	실시일자			실시근거		
	실시여부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				
	실시내용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m<sup>2</sup>)

(제2쪽)

실시성과 평가	측정기간	예산 절감액	구 수입증대액	행정개선 효과
	~			
	~			
	~			
	~			
상여금 지급	예산절감액		구 수입증대액	
	행정개선 효과			
	상여금 지급액		지급일자	
권리승계	종류	특허 ( ) 실용신안( ) 디자인( )	출원일	
	등록번호		등록 일자	

##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09-25호

## 지적측량기준점(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 고시

검단신도시 2차 및 금곡지구 일원에 대한 지적확정측량을 위해 설치한 지적측량기준점에 대하여 지적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 동법시행규칙 제59조(지적측량기준점성과의 고시 등)의 규정에 의거 지적측량기준점(지적삼각보조점 12점, 지적도근점 271점)을 고시합니다.

2009. 4. 28.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 개 요

1. 지적도근점의 명칭 및 번호(이하 좌표와 같음)
2. 좌표

일련번호	명 칭	좌 표	
		X좌표(m)	Y좌표(m)
별지참조			

## 3. 소재지와 측량연월일

- 소재지 :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2차(대곡동, 마전동, 불로동 일원)  
인천 서구 금곡지구(금곡동 일원)
- 측량연월일 : 2008년 11월 21일(지적삼각보조점), 2009년 2월 25일(지적도근점)

## 4. 측량성과보관 장소

인천광역시 서구청 토지정보과 및 대한지적공사 인천광역시본부 서구지사

## ■ 열람안내

○ 지적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적측량기준점 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분은 토지정보과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별 지 】

## 지적삼각보조점

일련번호	명 칭	구분	X	Y
인서보 119	지적삼각보조점	중부	458702.34	169392.59
		계양	8553.78	-5346.88
인서보 120	지적삼각보조점	중부	459307.01	169809.47
		계양	9159.69	-4931.82
인서보 121	지적삼각보조점	중부	459109.13	170930.68
		계양	8695.16	-3810.04
인서보 122	지적삼각보조점	중부	458849.50	170459.44
		계양	8704.13	-4280.50
인서보 123	지적삼각보조점	중부	457957.51	172069.96
		계양	7816.93	-2667.35
인서보 124	지적삼각보조점	중부	457400.54	171369.52
		계양	7257.87	-3366.09
인서보 125	지적삼각보조점	중부	457048.95	169976.83
		계양	6902.15	-4757.69
인서보 126	지적삼각보조점	중부	457698.05	169365.13
		계양	7549.41	-5371.33
인서보 127	지적삼각보조점	중부	457073.13	168096.39
		계양	6920.73	-6638.05
인서보 128	지적삼각보조점	중부	457129.25	168500.94
		계양	6978.08	-6233.68
인서보 129	지적삼각보조점	중부	456181.35	168559.71
		계양	6030.37	-6172.03
인서보 130	지적삼각보조점	중부	456192.67	168918.64
		계양	6042.78	-5813.14

## 지적도근점

일련번호	명 칭	계양좌표		중부좌표	
		X	Y	X	Y
6405	지적도근점	7939.85	-2848.83	458080.96	171888.84
6406	지적도근점	7961.18	-2892.86	458102.42	171844.87
6407	지적도근점	8013.88	-2912.46	458155.18	171825.43
6408	지적도근점	8123.51	-2968.44	458264.97	171769.77
6409	지적도근점	8251.61	-3033.05	458393.25	171705.55
6410	지적도근점	8306.82	-2973.04	458448.27	171765.73
6411	지적도근점	8356.34	-2994.85	458497.85	171744.07
6412	지적도근점	8443.75	-3010.16	458585.30	171729.02
6413	지적도근점	8492.77	-3049.13	458634.45	171690.19
6414	지적도근점	8494.55	-3086.26	458636.34	171653.06
6415	지적도근점	8494.23	-3127.88	458636.15	171611.43
6416	지적도근점	8472.65	-3208.75	458614.81	171530.50
6417	지적도근점	8486.62	-3280.34	458629.00	171458.95
6418	지적도근점	8508.74	-3362.45	458651.36	171376.90
6419	지적도근점	8507.48	-3431.53	458650.31	171307.82
6420	지적도근점	8540.14	-3505.47	458683.19	171233.98
6421	지적도근점	8598.81	-3535.29	458741.95	171204.33
6422	지적도근점	8640.02	-3554.07	458783.22	171185.68
6423	지적도근점	8707.52	-3565.46	458850.75	171174.49
6424	지적도근점	8752.71	-3563.79	458895.93	171176.29
6425	지적도근점	8795.21	-3598.16	458938.54	171142.05

6426	지적도근점	8848.76	-3662.54	458992.29	171077.83
6427	지적도근점	8906.60	-3689.88	459050.20	171050.66
6428	지적도근점	8940.25	-3707.63	459083.91	171033.01
6429	지적도근점	8955.22	-3752.28	459099.01	170988.41
6430	지적도근점	8979.25	-3800.22	459123.19	170940.54
6431	지적도근점	8443.58	-3863.01	458587.70	170876.15
6432	지적도근점	8640.67	-3899.35	458784.90	170840.40
6433	지적도근점	8840.45	-3995.51	458984.96	170744.84
6434	지적도근점	8965.98	-4060.95	459110.69	170679.77
6435	지적도근점	9076.09	-4046.69	459220.76	170694.36
6436	지적도근점	9078.65	-4209.63	459223.81	170531.43
6437	지적도근점	9126.54	-4354.75	459272.13	170386.45
6438	지적도근점	9142.67	-4535.54	459288.80	170205.71
6439	지적도근점	9165.41	-4680.60	459311.98	170060.71
6440	지적도근점	9168.83	-4808.20	459315.78	169933.12
6441	지적도근점	9136.65	-5030.19	459284.27	169711.03
6442	지적도근점	9221.41	-5062.15	459369.13	169679.32
6443	지적도근점	9318.12	-5134.24	459466.06	169607.52
6444	지적도근점	9429.24	-5172.31	459577.28	169569.79
6445	지적도근점	9411.80	-5217.28	459559.98	169524.77
6446	지적도근점	9376.99	-5245.67	459525.26	169496.27
6447	지적도근점	9348.49	-5311.44	459496.96	169430.41
6448	지적도근점	9381.05	-5474.18	459530.00	169267.77
6449	지적도근점	9370.82	-5578.21	459520.08	169163.71
6450	지적도근점	9275.02	-5556.54	459424.22	169185.10

6451	지적도근점	9230.61	-5586.58	459379.90	169154.93
6452	지적도근점	9119.52	-5574.72	459268.78	169166.45
6453	지적도근점	9057.44	-5659.30	459206.95	169081.68
6454	지적도근점	8938.26	-5654.69	459087.75	169085.93
6455	지적도근점	8814.37	-5697.68	458963.99	169042.58
6456	지적도근점	8748.97	-5631.82	458898.39	169108.24
6457	지적도근점	8722.56	-5579.49	458871.82	169160.49
6458	지적도근점	8693.46	-5471.26	458842.40	169268.63
6459	지적도근점	8588.71	-5377.85	458737.36	169361.73
6460	지적도근점	8740.20	-5416.78	458888.97	169323.25
6461	지적도근점	8799.95	-5302.80	458948.38	169437.42
6462	지적도근점	8727.76	-5186.83	458875.85	169553.17
6463	지적도근점	8623.07	-5255.81	458771.37	169483.87
6464	지적도근점	8541.05	-5298.83	458689.48	169440.61
6465	지적도근점	8526.59	-5265.00	458674.92	169474.40
6466	지적도근점	8407.04	-5214.08	458555.21	169524.96
6467	지적도근점	8334.35	-5155.31	458482.35	169583.51
6468	지적도근점	8299.20	-5087.85	458447.00	169650.87
6469	지적도근점	8254.99	-5088.76	458402.79	169649.83
6470	지적도근점	8176.55	-5130.03	458324.47	169608.33
6471	지적도근점	8075.88	-5134.09	458223.81	169603.97
6472	지적도근점	8030.65	-5168.63	458178.68	169569.29
6473	지적도근점	7947.35	-5201.75	458095.47	169535.92
6474	지적도근점	7913.03	-5241.01	458061.27	169496.56
6475	지적도근점	7896.53	-5322.24	458045.01	169415.28

6476	지적도근점	7858.56	-5356.88	458007.14	169380.52
6477	지적도근점	7802.06	-5391.68	457950.75	169345.55
6478	지적도근점	7730.42	-5384.28	457879.09	169352.73
6479	지적도근점	7671.08	-5350.26	457819.65	169386.57
6480	지적도근점	7602.45	-5392.21	457751.15	169344.41
6481	지적도근점	7490.77	-5195.87	457638.88	169540.40
6482	지적도근점	7406.56	-5224.16	457554.77	169511.86
6483	지적도근점	7319.49	-5156.35	457467.50	169579.41
6484	지적도근점	7235.03	-5123.23	457382.94	169612.28
6485	지적도근점	7160.21	-5110.41	457308.08	169624.87
6486	지적도근점	7067.08	-5190.79	457215.20	169544.20
6487	지적도근점	7072.22	-5257.29	457220.54	169477.71
6488	지적도근점	7027.71	-5280.84	457176.10	169454.02
6489	지적도근점	6935.49	-5315.87	457083.99	169418.70
6490	지적도근점	6845.45	-5239.02	456993.72	169495.27
6491	지적도근점	6834.82	-5123.19	456982.74	169611.07
6492	지적도근점	6878.55	-4952.43	457025.94	169781.95
6493	지적도근점	6768.99	-4873.78	456916.13	169860.26
6494	지적도근점	6821.59	-4758.58	456968.37	169975.61
6495	지적도근점	6743.37	-4713.47	456890.01	170020.48
6496	지적도근점	6603.92	-4565.65	456750.11	170167.86
6497	지적도근점	6553.60	-4445.82	456699.41	170287.53
6498	지적도근점	6560.88	-4387.09	456706.51	170346.28
6499	지적도근점	6494.26	-4248.19	456639.45	170484.96
6500	지적도근점	6491.31	-4136.69	456636.16	170596.45

6501	지적도근점	6501.01	-3985.51	456645.40	170747.67
6502	지적도근점	6512.86	-3823.29	456656.76	170909.93
6503	지적도근점	6338.20	-3752.53	456481.98	170980.14
6504	지적도근점	6374.04	-4302.30	456519.36	170430.47
6505	지적도근점	6305.53	-4412.58	456451.17	170319.96
6506	지적도근점	6198.09	-4443.23	456343.78	170288.98
6507	지적도근점	6101.72	-4636.75	456247.97	170095.14
6508	지적도근점	6017.93	-4689.75	456164.31	170041.88
6509	지적도근점	5964.44	-4650.88	456110.68	170080.59
6510	지적도근점	5908.03	-4585.08	456054.05	170146.20
6511	지적도근점	5901.34	-4551.44	456047.26	170179.82
6512	지적도근점	5898.50	-4535.83	456044.38	170195.43
6513	지적도근점	5864.24	-4554.63	456010.16	170176.53
6514	지적도근점	5793.77	-4558.82	455939.69	170172.14
6515	지적도근점	7237.59	-3111.64	457379.49	171623.87
6516	지적도근점	7195.34	-2966.98	457336.80	171768.38
6517	지적도근점	7109.75	-2997.48	457251.30	171737.63
6518	지적도근점	6979.81	-2989.98	457121.32	171744.74
6519	지적도근점	6853.30	-2910.92	456994.56	171823.41
6520	지적도근점	6767.00	-2821.33	456907.99	171912.73
6521	지적도근점	6815.95	-2719.14	456956.63	172015.05
6522	지적도근점	6837.69	-2669.76	456978.23	172064.50
6523	지적도근점	6843.58	-2609.41	456983.94	172124.86
6524	지적도근점	6928.92	-2550.60	457069.09	172183.92
6525	지적도근점	6927.60	-2425.70	457067.39	172308.80

6526	지적도근점	7048.80	-2339.58	457188.31	172395.27
6527	지적도근점	6998.87	-2211.56	457138.00	172523.13
6528	지적도근점	7128.66	-2303.08	457268.07	172432.02
6529	지적도근점	7272.33	-2196.41	457411.43	172539.16
6530	지적도근점	7485.63	-2242.53	457624.89	172493.69
6531	지적도근점	7667.32	-2468.49	457807.28	172268.33
6532	지적도근점	7781.59	-2613.77	457922.01	172123.43
6533	지적도근점	6864.44	-2689.10	457005.04	172045.24
6534	지적도근점	6927.54	-2747.89	457068.31	171986.64
6535	지적도근점	7049.85	-2859.95	457190.96	171874.96
6536	지적도근점	7272.63	-2770.57	457413.48	171965.03
6537	지적도근점	7380.96	-2698.56	457521.59	172037.38
6538	지적도근점	6562.60	-3596.52	456705.91	171136.87
6539	지적도근점	6722.36	-3596.25	456865.66	171137.64
6540	지적도근점	6847.55	-3627.73	456990.94	171106.55
6541	지적도근점	7136.32	-3748.07	457280.08	170987.10
6542	지적도근점	7437.34	-3851.57	457581.42	170884.53
6543	지적도근점	7482.84	-4074.34	457627.61	170661.90
6544	지적도근점	7524.87	-4204.65	457670.04	170531.72
6545	지적도근점	7396.81	-4196.95	457541.94	170539.03
6546	지적도근점	7298.17	-4254.42	457443.47	170481.24
6547	지적도근점	7190.33	-4372.98	457335.98	170362.35
6548	지적도근점	7167.24	-4432.81	457313.07	170302.45
6549	지적도근점	7161.85	-4510.03	457307.92	170225.21
6550	지적도근점	7122.58	-4604.64	457268.94	170130.48

6551	지적도근점	7053.44	-4670.88	457199.99	170064.03
6552	지적도근점	7022.66	-4802.52	457169.61	169932.30
6553	지적도근점	7017.10	-4876.15	457164.27	169858.65
6554	지적도근점	6897.03	-4895.69	457044.24	169838.74
6555	지적도근점	7462.75	-3827.82	457606.76	170908.36
6556	지적도근점	7669.93	-3766.03	457813.75	170970.78
6557	지적도근점	7755.29	-3645.17	457898.75	171091.90
6558	지적도근점	7894.81	-3682.77	458038.39	171054.73
6559	지적도근점	7997.82	-3668.60	458141.37	171069.21
6560	지적도근점	8032.56	-3625.64	458175.98	171112.27
6561	지적도근점	8049.75	-3527.79	458192.87	171210.18
6562	지적도근점	8093.68	-3428.05	458236.50	171310.07
6563	지적도근점	8119.99	-3398.40	458262.72	171339.80
6564	지적도근점	8187.18	-3258.28	458329.49	171480.13
6565	지적도근점	8176.36	-3192.57	458318.47	171545.80
6566	지적도근점	7808.30	-3786.64	457952.19	170950.59
6567	지적도근점	7907.15	-3864.90	458051.27	170872.64
6568	지적도근점	8081.82	-3907.29	458226.07	170830.79
6569	지적도근점	8147.10	-4051.11	458291.79	170687.16
6570	지적도근점	8210.54	-4245.32	458355.82	170493.12
6571	지적도근점	8195.59	-4306.03	458341.05	170432.37
6572	지적도근점	8224.62	-4386.50	458370.32	170351.99
6573	지적도근점	8267.75	-4441.04	458413.61	170297.58
6574	지적도근점	8363.65	-4497.15	458509.68	170241.76
6575	지적도근점	8482.78	-4432.26	458628.62	170307.01

6576	지적도근점	8611.80	-4398.03	458757.53	170341.63
6577	지적도근점	8635.66	-4334.57	458781.20	170405.16
6578	지적도근점	8764.98	-4212.84	458910.15	170527.28
6579	지적도근점	8312.72	-4568.49	458458.96	170170.27
6580	지적도근점	8362.29	-4623.08	458508.69	170115.83
6581	지적도근점	8394.97	-4669.68	458541.51	170069.33
6582	지적도근점	8419.41	-4792.73	458566.32	169946.36
6583	지적도근점	8435.24	-4914.85	458582.52	169824.29
6584	지적도근점	8450.44	-4986.78	458597.94	169752.40
6585	지적도근점	8414.11	-5083.15	458561.90	169655.91
6586	지적도근점	8446.35	-5136.94	458594.30	169602.22
6587	지적도근점	5577.63	-5478.65	455726.60	169251.72
6588	지적도근점	5603.00	-5593.25	455752.31	169137.19
6589	지적도근점	5650.73	-5723.32	455800.43	169007.26
6590	지적도근점	5663.41	-5829.97	455813.43	168900.65
6591	지적도근점	5742.85	-5944.70	455893.20	168786.16
6592	지적도근점	5814.79	-6024.76	455965.38	168706.32
6593	지적도근점	5952.13	-6060.53	456102.81	168670.97
6594	지적도근점	6058.52	-6098.74	456209.29	168633.09
6595	지적도근점	6216.82	-6174.32	456367.82	168558.00
6596	지적도근점	6310.19	-6195.91	456461.26	168536.69
6597	지적도근점	6365.26	-6229.52	456516.43	168503.24
6598	지적도근점	6502.42	-6144.26	456653.33	168588.92
6599	지적도근점	6561.81	-6080.15	456712.53	168653.21
6600	지적도근점	6635.15	-6001.95	456785.63	168731.63

6601	지적도근점	6772.20	-5863.18	456922.26	168870.82
6602	지적도근점	6672.79	-5808.40	456822.70	168925.29
6603	지적도근점	6559.32	-5755.85	456709.08	168977.50
6604	지적도근점	6504.67	-5793.94	456654.55	168939.24
6605	지적도근점	6486.94	-5857.32	456637.02	168875.81
6606	지적도근점	6436.27	-5791.35	456586.15	168941.62
6607	지적도근점	6415.00	-5741.38	456564.73	168991.53
6608	지적도근점	6393.90	-5653.34	456543.36	169079.51
6609	지적도근점	6472.41	-5653.03	456621.87	169080.06
6610	지적도근점	6506.82	-5669.03	456656.33	169064.17
6611	지적도근점	6559.20	-5622.90	456708.57	169110.45
6612	지적도근점	6703.15	-5595.66	456852.44	169138.13
6613	지적도근점	6788.29	-5586.01	456937.55	169148.03
6614	지적도근점	6828.37	-5549.88	456977.52	169184.28
6615	지적도근점	6782.98	-5554.20	456932.15	169179.83
6616	지적도근점	6747.13	-5545.97	456896.28	169187.96
6617	지적도근점	6629.71	-5559.78	456778.91	169173.80
6618	지적도근점	6593.45	-5534.84	456742.57	169198.63
6619	지적도근점	6544.50	-5554.23	456693.68	169179.09
6620	지적도근점	6541.81	-5523.11	456690.90	169210.21
6621	지적도근점	6496.65	-5478.59	456645.60	169254.59
6622	지적도근점	6451.81	-5422.62	456600.59	169310.42
6623	지적도근점	6386.75	-5314.58	456535.20	169418.25
6624	지적도근점	6326.43	-5309.29	456474.87	169423.36
6625	지적도근점	6252.89	-5425.75	456401.69	169306.67

6626	지적도근점	6213.75	-5348.70	456362.33	169383.60
6627	지적도근점	6172.77	-5334.85	456321.32	169397.33
6628	지적도근점	5735.17	-5568.90	455884.39	169161.94
6629	지적도근점	5862.63	-5549.26	456011.79	169181.98
6630	지적도근점	5841.93	-5471.58	455990.86	169259.60
6631	지적도근점	5821.31	-5366.83	455969.93	169364.29
6632	지적도근점	5779.50	-5220.40	455927.68	169510.59
6633	지적도근점	5750.85	-5160.82	455898.86	169570.09
6634	지적도근점	5807.50	-5138.41	455955.44	169592.68
6635	지적도근점	5837.60	-5130.12	455985.52	169601.06
6636	지적도근점	5838.63	-5079.81	455986.40	169651.37
6637	지적도근점	5818.53	-5047.60	455966.20	169683.52
6638	지적도근점	5869.76	-5037.12	456017.40	169694.15
6639	지적도근점	5924.84	-5011.07	456072.40	169720.37
6640	지적도근점	6024.96	-5011.35	456172.53	169720.39
6641	지적도근점	6071.61	-5753.30	456221.31	168978.57
6642	지적도근점	5999.30	-5702.17	456148.87	169029.48
6643	지적도근점	5997.98	-5673.44	456147.47	169058.21
6644	지적도근점	6085.95	-5657.17	456235.42	169074.74
6645	지적도근점	6175.61	-5659.22	456325.09	169072.96
6646	지적도근점	6261.26	-5664.59	456410.76	169067.85
6647	지적도근점	6319.61	-5638.14	456469.03	169094.49
6648	지적도근점	6094.14	-5022.59	456241.75	169709.36
6649	지적도근점	6145.66	-4973.79	456293.12	169758.32
6650	지적도근점	6169.13	-4977.14	456316.60	169755.04

6651	지적도근점	6193.03	-4979.25	456340.50	169753.00
6652	지적도근점	6234.43	-5025.07	456382.05	169707.30
6653	지적도근점	6265.36	-5121.51	456413.28	169610.95
6654	지적도근점	6274.88	-5195.88	456423.02	169536.61
6655	지적도근점	6181.05	-5474.79	456329.97	169257.41
6656	지적도근점	6034.55	-5666.86	456184.04	169064.90
6657	지적도근점	6788.92	-6270.91	456940.21	168463.13
6658	지적도근점	6848.87	-6256.36	457000.11	168477.87
6659	지적도근점	7025.10	-6225.71	457176.25	168509.05
6660	지적도근점	7108.81	-6249.85	457260.03	168485.17
6661	지적도근점	7231.13	-6303.62	457382.52	168431.77
6662	지적도근점	7253.12	-6386.98	457404.76	168348.48
6663	지적도근점	7368.64	-6401.14	457520.32	168334.67
6664	지적도근점	7528.75	-6453.82	457680.59	168282.48
6665	지적도근점	7437.21	-6688.94	457589.77	168047.08
6666	지적도근점	7345.42	-6743.02	457498.14	167992.72
6667	지적도근점	7284.52	-6734.19	457437.21	168001.36
6668	지적도근점	7164.05	-6750.83	457316.79	167984.36
6669	지적도근점	7167.47	-6842.30	457320.49	167892.90
6670	지적도근점	7053.08	-6754.66	457205.83	167980.19
6671	지적도근점	6937.42	-6711.47	457090.04	168023.02
6672	지적도근점	6854.43	-6609.77	457006.75	168124.47
6673	지적도근점	6741.68	-6490.81	456893.65	168243.10
6674	지적도근점	6677.38	-6426.02	456829.15	168307.69
6675	지적도근점	6541.71	-6328.69	456693.18	168404.61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9-545호

## 인천광역시 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규정 및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30일

###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조 례 명 : 인천광역시 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의무 구매의 이행과 친환경상품 생산·소비의 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낭비 및 환경오염 방지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친환경상품의 의무구매 적용대상 공공기관을 정함(안 제2조)
- 나. 구청장은 친환경상품의 구매·생산 촉진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안 제4조), 매년 다음연도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공표하여야 함(안 제5조)
- 다. 구청장은 매년 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을 집계·공표하여야 함(안 제6조)
- 라. 친환경상품의 의무구매 범위와 예외규정을 정함(안 제7조)

- 마. 친환경상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을 정함(안 제8조)
- 바. 구청장은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9조)
- 사. 구청장은 친환경상품의 생산 및 구매 촉진을 위하여 관내기업을 지원할 수 있고, 관련정보를 조사·수집하여 제공할 수 있음(안 제10조 ~ 제11조)
- 아. 구청장은 친환경적인 소비생활의 확산을 위해 친환경상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고, 교육·홍보 등 행정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2조)
- 자. 친환경상품의 생산·소비 촉진에 기여한 유공자 발굴·포상(안 제13조)

※ 제정 조례(안) 별첨

####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05.2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참조 : 환경보전과장, 우편번호 404-701,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 323번지(심곡동 244번지) Fax:(032)560-4899】 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나. 성명(단체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사항 등
- 조례(안)에 대한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보전과 환경관리팀 【☎ 032)560-4891】 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 인천광역시 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다.

1.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직속기관·출장소 및 하부행정기관
2.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3. 구에서 설립한 공사·공단 및 기관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친환경상품 구매·생산 촉진 시책의 수립)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 내에서 친환경상품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친환경상품 구매·생산 촉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계획에 관한 사항
2.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3. 관내기업의 친환경상품 기술개발 및 판매지원에 관한 사항

4. 관내 친환경상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제5조(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친환경상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연도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구 홈페이지 및 구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친환경상품의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친환경상품 구매계획에 관한 사항
2.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에 관한 사항
3. 계약특수조건 규정, 제도개선 사항 등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 관리)**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집계·공표하는 전년도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친환경상품의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3. 친환경상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 ②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방법은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친환경상품 구매의무 등)** ① 법 제6조에 따른 친환경상품 구매의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3. 건설공사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 ② 법 제6조제5호에 따른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친환경상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친환경상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
  2. 사용자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친환경상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5. 친환경상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그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제8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친환경상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저공해자동차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3.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4.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품
- ② 구청장은 적합한 친환경상품을 발굴하여 관내 기관의 장 등에게 구매를 권고 할 수 있다.

**제9조(교육)** 구청장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제2조에서 규정한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관내기업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관내기업의 친환경상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친환경상품의 유통·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제11조(친환경상품 정보제공)** 구청장은 친환경상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조사·수집하여 관내기업, 산업계 및 민간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조사·수집에 관한 업무를 관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친환경상품 구매 확산)** ① 구청장은 친환경적인 소비생활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기업 등의 기관에 친환경상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기관·단체 등이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 사업에 필요한 경우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구청장은 친환경상품의 생산·소비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생산자 및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